

제23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10.18.)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제출자 : 2018. 9. 21./거창군수
- 회부일자 : 2018. 9. 21.
- 상정일자 : 2018. 10. 17.
- 의안번호 :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2018~59호)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2018~60호)

2. 제안이유 및 골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입 결산액 (A)	세 출 결산액 (B)	결산상 잉여금 (A-B)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 속 비 이 월	보 조 금 사용잔액	순 세 계 잉 여 금
계	683,952	431,919	252,033	44,176	28,910	10,186	3,919	164,842
일반회계	610,801	398,099	212,702	38,945	25,954	10,186	3,847	133,770
특별회계	73,151	33,820	39,331	5,231	2,956		72	31,072

○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포함)의 결산 총괄은

- 수납액은 683,952백만원이며
- 지출액은 431,919백만원으로
- 결산상 잉여금은 252,033백만원임.

○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은 44,176백만원이며
- 사고이월은 28,910백만원이고
- 계속비이월은 10,186백만원으로
-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3,919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 순세계 잉여금은 164,842백만원임.

2)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 처리		비율(%)	
					결손처분	이월	C/A	C/B
계	647,714	686,999	683,952	3,047	689	2,358	105.6	99.6
일반회계	576,360	613,215	610,801	2,414	646	1,768	106.0	99.6
특별회계	71,354	73,784	73,151	633	43	590	102.5	99.1

○ 2017년도 실제 수납액은 683,952백만원으로서

- 징수결정액 686,999백만원 대비 99.6%이며,
- 미수납액 3,047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4%임.

3)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성립 후증감액 (B)	예산현액 (C)=A+B	지출원인 행위액 (D)	지출액 (E)	다음연도 이월액 (F)	집행잔액 G=C-E-F	불용비율 G/C (%)
계	570,863	76,851	647,714	485,512	431,920	83,472	132,322	20.4
일반회계	505,735	70,625	576,360	446,443	398,099	75,085	103,176	17.9
특별회계	65,128	6,226	71,354	39,069	33,821	8,387	29,146	40.8

○ 2017년도 총지출액은 431,920백만원으로서

- 예산현액 647,714백만원 대비 66.7%이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83,472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2.9%이며
- 집행잔액 132,322백만원은 예산현액의 20.4%임.

4)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

가) 이용(일반회계) : 해당사항 없음

나) 전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용금액		비고
		감액	증액	
21건	22,143	539	539	

심사의견

- 예산 집행은 당초 예산 편성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적법하지만 여건 변화, 사업의 일부변경 등 부득이하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경우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에 근거하여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에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산불진화 신규차량 구입, 농업인 주택 등 설계비지원 사업량 증가, 쌀·밭조건 불리직불금 예산 부족, 청소년 수련관 직영 등에 전용한 것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전용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다) 이 체(일반회계)

- 내역 : 8건 66,627천원
- 사유 : 목재문화체험장 시설물관리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 이체
※ 세부내역 : 결산서(p399)

심 사 의 견

- 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거창군의 세부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2017. 7. 3. 훈령 제409호) 목재문화체험장 시설물관리 업무가 산림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이관됨에 따라 2017. 9. 5일 문화관광과로 관련 예산을 이체 승인한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됨.

5) 계속비 결산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총 투 자 액			당 해 연 도 집 행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합 계	96,318,346	81,019,264	588,492	29,186,322	16,574,228	21,072,397	585,643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5,200,000	4,611,508	588,492	1,758,322	1,172,679	0	585,643
스피드익스트림타운 조성	2,998,830	1,120,206	0	1,878,924	682,242	1,196,6830	0
거창 치유의 숲 조성사업	3,100,000	2,449,529	0	1,834,121	1,370,035	464,086	0
덧시골 폭포 등산로 연결사업	200,000	70,882	0	200,000	70,882	129,118	0
거창 향노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300,000	254,159	0	73,110	27,269	45,841	0
농촌테마공원 조성	11,787,159	9,952,157	0	3,252,814	3,032,384	198,478	0
기초생활인프라 (소규모 용수개발)	14,978,440	13,818,475	0	3,423,827	3,050,134	373,693	0
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지구)	31,289,091	26,287,357	0	8,331,516	2,678,475	4,875,577	0
권역단위종합개발	24,805,826	22,082,780	0	6,774,688	4,117,917	1,731,985	0
마을단위경제(체험소득)	100,000	33,455	0	100,000	33,455	66,545	0
마을단위환경(경관생태)	200,000	78,113	0	200,000	78,113	121,887	0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	439,000	260,643	0	439,000	260,643	178,357	0
시군창의	677,000	0	0	677,000	0	677,000	0
취약지구 개조(공항지구)	243,000	0	0	243,000	0	243,000	0

심 사 의 견

-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관리하며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며,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등 총 14건의 계속사업비 이월 내역은 모두 타당함.

6) 다음연도 이월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예산현액	이월액	비 고
계	293	227,859	75,085	
명 시 이 월	105	87,196	38,946	
사 고 이 월	162	120,037	25,953	
계 속 비 이 월	26	20,626	10,186	

심 사 의 견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 사전절차 이행, 사업시기 미도래, 사업계획 및 설계변경, 준공시기 미도래, 사업기간 부족, 사업위치 미확정,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나,
- 이월 사유와 이월 금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는 사례로 예산 편성 시 사업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집행을 위한 효율적인 계획 수립 등의 노력이 필요함.

7) 예비비 지출

(단위 : 천원)

부 서	사 업 명	사업 기간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액)
계			1,340,377	1,041,512	0	298,865
건설과	한발대비 용수개발(1차)	2017.6~12	535,000	450,860	0	84,140
	한발대비 용수개발(2차)	2017.6~12	585,000	376,505	0	208,495
농업기술 센터	가축방역지원	2017.1~5	21,910	19,585	0	2,325
	벼 병해충 방제	2017.7~9	198,467	194,562	0	3,905

심 사 의 견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건설과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2017년 극심한 가뭄으로 모내기를 하지 못하는 농가에게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관정개발사업임.
- 농업기술센터는 경북 김천지역 내 야생조수류에서 고병원성 AI 검출과 관련하여 경북도 경계지역에 긴급 방역초소 운영과 멸강나방 긴급 방제사업으로 재정집행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로 예비비 집행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8) 기금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조 성 액㉢	사 용 액㉣	
계(7종)	13,385,704	179,470	763,932	584,462	13,565,174
식 품 진 흥 기 금	65,562	944	5,944	5,000	66,506
중소기업육성기금	6,584,745	△24,519	111,573	136,092	6,560,226
사 회 복 지 기 금	4,026,403	36,575	106,516	69,941	4,062,978
재 난 관 리 기 금	884,139	142,711	487,790	345,079	1,026,850
아름예술제진흥기금	500,318	128	7,628	7,500	500,446
옥외광고정비기금	235,219	25,060	25,910	850	260,279
체 육 진 흥 기 금	1,089,318	△1,429	18,571	20,000	1,087,889

심 사 의 견

- 2017년 말 현재 기금은 7종으로서 조성액은 13,565,174천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763,932천원이고, 사용액은 584,462천원으로 179,470천원이 증가되었음.
- 기금은 조성보다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식품진흥기금, 아릅예술제진흥기금 집행이 미비하므로 향후 목적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필요함.

9) 채권결산

○ 회계별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 해 연 도 발 생 액	당 해 연 도 소 멸 액	당해연도말 잔 액
합 계		4,883,974	220,151	213,945	4,890,180
일반 회계	소 계	4,488,827			4,488,827
	전화선예치금	12,474	-	-	12,474
	학자대여금	4,343,353	-	-	4,343,353
	회 원 권	133,000	-	-	133,000
특별 회계	농업발전기금	5,250	-	-	5,250
기금	사회복지기금	389,897	220,151	213,945	396,103

※ 채권액은 원금 + 이자 기준임.

심 사 의 견

- 전년도 말 잔액은 4,883,974천원으로 당해 연도에 220,151천원이 발생하고, 213,945천원이 소멸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4,890,180천원임.
- 채권 종류별 현황을 보면 기금채권 396,103천원, 보증금채권 145,474천원, 융자금 채권 4,348,603천원으로 보증금채권은 전화예치금과 회원권이고, 융자금채권은 학자대여금과 농업발전기금임.

10) 채무결산

- 거창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2014년도부터 채무 제로화를 달성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0원임.

11) 보조금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반납액)	
합계	194,939,848 (70,472,158)	195,404,238 (71,700,306)	158,581,400 (50,659,783)	29,426,224 (16,729,688)	7,396,614 (4,310,835)	
일반회계	188,293,884 (69,595,894)	188,758,274 (70,824,042)	152,626,189 (50,024,660)	28,808,466 (16,489,909)	7,323,619 (4,309,473)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	30,000	30,000	29,928	-	72
	의료보호기금	250,985	250,985	183,298	-	67,687
	산업단지조성사업	930,000 (870,000)	930,000 (870,000)	689,793 (629,793)	239,779 (239,779)	428 (428)
	수질개선	5,434,979 (6,264)	5,434,979 (6,264)	5,052,192 (5,330)	377,979 -	4,808 (934)

- ※ 군비부담액은 71,700,306천원으로 총 보조사업비(수령액)에 대하여 36.7%에 해당함
- ※ ()내서는 군비 부담액임.

심사의견

- 2017년도 보조금 수령액은 195,404,238천원으로 예산액 194,939,848천원 대비 100.2%이고, 집행액은 158,581,400천원으로 예산액의 81.3%이며, 29,426,224천원이 이월되고 7,396,614천원을 반납하였음.
- 일반회계 군비부담액은 70,824,042천원으로 총 보조사업비(수령액)에 대하여 37.5%에 해당됨.

3.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가. 거창군 재정의 개황

1) 재정여건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기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 천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일반회계	세 입	554,648,770	498,526,361	514,855,237	523,685,518	610,800,628
	세 출	445,698,576	367,822,087	383,476,529	369,344,239	398,098,997
	결산상잉여금	108,950,194	130,704,274	131,378,708	154,341,279	212,701,631
특별회계	세 입	84,460,549	64,293,672	67,563,402	66,373,684	73,151,701
	세 출	50,201,268	34,668,943	35,733,977	31,027,202	33,820,555
	결산상 잉여금	34,259,281	29,264,729	31,829,425	35,346,481	39,331,146
기금	수 입	12,261,992	13,749,971	14,027,841	14,188,402	14,149,637
	지 출	1,152,616	909,612	792,113	802,697	584,462
	결산상 잉여금	11,109,376	12,840,359	13,235,728	13,385,705	13,565,175
총 계	세입(수입)	651,371,311	576,570,004	596,446,480	604,247,604	698,101,966
	세출(지출)	497,052,460	403,400,642	420,002,619	401,174,138	432,504,014
	결산상 잉여금	154,318,851	173,169,362	176,443,861	203,073,465	265,597,952

- 2017회계연도의 재정규모가 늘어난 것은 일반회계 세수증가로 세입이 늘어난데 기인한 것이며, 세출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여 결산상 잉여금은 265,597,952천원으로 전년대비 31% 증가하였으며, 세출을 주민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는 현년도에 6,981,066원이다.

전년대비 재무제표 요약분석

(단위 : 천원)

구 분	재 정 상 태			재 정 운 영			비 고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17년	2,160,618,104	32,819,442	2,127,798,662	471,981,217	332,988,600	(138,992,617)	
2016년	1,985,454,374	40,329,093	1,945,125,281	410,472,829	323,968,427	(86,504,402)	
증 감	175,163,730	(7,509,651)	182,673,381	61,508,388	9,020,173	(52,488,215)	

○ 2017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182,673,381천원증가 재정 상태는 9.4%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52,488,215천원(60.7%) 증가하여 총 자산은 2,160,618,104천원으로 전년대비 8.8%가 증가하였다.

거창군 자치단체의 지난 5년간 채무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

(단위 : 천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고
자치단체 채무계 a(b+c+d)	756,000	0	0	0	0	
공채 b		0	0	0	0	
차입금 c	756,000	0	0	0	0	
채무부담행위 d		0	0	0	0	
지방공기업 채무 e		0	0	0	0	
채무총합계 f(a+e)	756,000	0	0	0	0	

○ 2013년도 756,000천원의 채무를 상환한 후 2014년도부터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 재정건전성

-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 규정(훈령)에 의하면 예산대비 채무비율 등 지표를 주의단계나 심각단계에 있는지를 알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 판단 지표

관점	재정지표	산정방식	주의 기준	심각(위기) 기준
채무 관리	① 예산대비채무비율	$\frac{\text{지방채무 잔액}}{\text{총예산}}$	25%초과	40%초과
	② 채무상환비 비율	$\frac{\text{지방채무 상환액}}{\text{일반재원}}$	12%초과	17%초과
세입 관리	③ 지방세 징수액현황	$\frac{\text{당해연도 월별 누적 징수액}}{\text{최근 3년 평균 월별징수액}}$	50%미만	0%미만
자금 관리	④ 금고잔액 현황	$\frac{\text{당해연도 분기말 잔고}}{\text{최근 3년 평균 분기말 잔고}}$	20%미만	10%미만
공기업	⑤ 공기업 부채비율	$\frac{\text{부 채}}{\text{순 자 산}}$	400%초과	600%초과
	⑥ 개별공기업 부채비율			

○ 재정자립도 : 7.7%

○ 재정자주도 : 55.5%

거창군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개 기준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어 재정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하겠음

나. 세입·세출 결산

1) 총괄

201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기금을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 잉여금 (C =A-B)
합 계	661,594,876	698,101,966	432,504,014	265,597,952
일반회계	576,360,055	610,800,628	398,098,997	212,701,631
특별회계	71,353,793	73,151,701	33,820,555	39,331,146
공기업특별회계	39,839,927	40,604,511	22,016,288	18,588,223
상수도사업	15,035,386	15,635,812	8,470,454	7,165,358
하수도사업	24,804,541	24,968,699	13,545,834	11,422,865
기타특별회계	31,513,866	32,547,190	11,804,267	20,742,923
의료보호기금	835,763	834,800	751,002	83,79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392,668	404,504	392,596	11,908
주차장관리	593,566	585,158	134,411	450,747
산업단지조성사업	5,294,623	6,067,327	1,790,753	4,276,574
수질개선	5,538,860	5,516,102	5,062,790	453,312
댐주변지역지원사업	689,749	692,875	609,384	83,491
농업발전기금	18,168,637	18,446,424	3,063,331	15,383,093
기 금	13,881,028	14,149,637	584,462	13,565,175

(단위 : 천원)

회 계 별	현년도 채무상환	이 월 액(D)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합 계		44,176,654 (200,000)	28,909,993	10,185,664	3,918,730	164,841,736
일반회계		38,945,568	25,953,530	10,185,664	3,847,097	133,769,772
특별회계		5,231,086 (200,000)	2,956,464		71,633	31,071,964
공기업특별회계		4,632,418	2,846,049			11,109,756
상수도사업		438,455	755,403			5,971,500
하수도사업		4,193,963	2,090,646			5,138,256
기타특별회계		598,688 (200,000)	110,415		71,633	19,962,208
의료보호기금					67,687	16,11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72	11,835
주차장관리						450,747
산업단지조성사업		220,689 (200,000)	30,970			4,024,915
수질개선		377,979			3,874	71,459
댐주변지역지원사업			79,445			4,047
농업발전기금						15,383,093
기 금		-	-	-	-	-

※ ()는 자금 없는 이월임

-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결산액은 698,101,966천원으로 예산액 661,594,876천원보다 36,507,090천원이 더 수납되었다. 전년대비 93,854,362천원(15.5%)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34.3%)이고, 총 698,101,966천원 중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7.98%, 60.66%이다

- 세출은 세입결산액의 61.4%인 432,504,014천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65,597,952천원이다.
이 중 명시이월비 44,176,654천원, 사고이월비 28,909,993천원 및 계속비 10,185,664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918,730천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에서 현년도 채무상환으로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순세계 잉여금은 164,841,736천원이다.
-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과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결산상잉여금(기금포함)은 265,597,952천원임이 확인된다.
- 세출은 전년대비 31,329,876천원(7.8%) 증가하였으며, 총 661,594,876천원의 예산현액 중 432,504,014천원이 집행되어 집행율은 65%로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모두 확인되었다.

2) 일반회계

(가) 세 입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결산액	576,360,055	613,215,014	610,800,628	646,233	2,414,386
결산확인액	576,360,055	613,215,014	610,800,628	646,233	2,414,386
차 액	0	0	0	0	0

○ 세입결산 개요

- ▶수납액 610,800,628천원은 예산액의 105.6%로서 34,440,573천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증가를 들 수 있다.
-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9.6%로 높아졌으며 불납결손액은 646,233천원으로서 지방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무재산 569,360천원,

행방불명 12,988천원, 시효소멸 38,612천원, 기타 25,273천원으로 발생되었는바, 본 연도 세입의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결산액은 일치되었다.

-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출납액과 부합되었다.
- 불납결손처분은 646,233천원이 발생되었으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처분한 것으로 검사결과 적정하게 검토되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610,800,628	610,800,628	0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 : 천원)

연도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예산대비 징수결정액	징수결정 대비 수납액	징수결정 대비 불납결손액
2017	576,360,055	613,215,014	610,800,628	646,233	99.6%	106.0%	0.11%
2016	511,522,341	527,141,570	523,685,518	280,741	103.1%	99.3%	0.05%
증감	64,837,714	86,073,444	87,115,110	365,492			

- 예산대비 징수결정액이 증가된 주된 이유는 지방세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 및 주행세분 증가(기름값 상승)에 따라 자동차세 증가 및 사업장 증가에 따른 법인소득,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세수증대이며,
- 세외수입은 부가가치세 일부를 전환하는 지방소비세 세입증가, 생활안정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이관을 들 수 있다.

- 지방교부세증가분은 2017년 정부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라 추가교부(일자리 확대) 및 세출자체노력도(행사축제성 경비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인센티브)등이 수납되었다.
-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280,741천원 보다 365,492천원이 증가한 646,233천원이다. 불납결손의 주된 사유는 무재산 569,360천원, 행방불명 12,988천원, 시효소멸 38,612천원, 기타 25,273천원이다.

세목별 세입 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	미수납액	
합계	576,360,055	613,215,014	610,800,628	646,233	2,414,386	
지방세	소계	21,184,196	27,927,035	26,748,369	112,954	1,178,666
	주민세	760,675	985,619	952,049	793	33,570
	재산세	4,455,120	5,094,420	4,967,990	874	126,430
	자동차세	7,780,113	10,564,068	10,145,380	2,215	418,688
	담배소비세	3,618,590	4,430,120	4,430,121	0	0
	지방소득세	4,113,497	5,878,327	5,705,515	15,087	172,811
	지난년도수입	456,201	974,481	547,314	93,985	427,167
세의수입	소계	11,881,755	20,318,529	19,082,809	533,279	1,235,720
	재산임대수입	138,609	203,903	188,753	0	15,150
	사용료수입	1,484,586	1,263,194	1,255,989	0	7,205
	수수료수입	1,467,600	1,488,152	1,481,107	0	7,045
	사업수입	1,202,000	1,259,029	1,258,914	0	115
	징수교부금수입	465,071	744,682	744,682	0	0

세의 수입	이자수입	2,270,738	2,684,600	2,684,598	0	2
	재산매각수입	200,000	466,948	466,948	0	0
	부담금	10,000	7,711	7,711	0	0
	과징금및과태료	303,537	784,350	562,337	12,224	222,013
	기타수입	4,189,614	10,796,339	10,229,436	0	566,903
	지난연도 수입	150,000	619,621	202,334	521,055	417,287
지방교부세		221,816,000	234,611,287	234,611,287	0	0
조정교부금 등		13,800,000	27,123,832	27,123,832	0	0
보조금		148,730,666	146,707,474	146,707,474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8,947,438	156,526,857	156,526,857	0	0

○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4.4%인 26,748,369천원이, 세외 수입은 3.1%인 19,082,809천원이 수납되었고, 지방교부세는 38.4%인 234,611,287천원, 조정 교부금 등은 4.4%인 27,123,832원, 보조금 등은 24.1%인 146,707,474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5.6%인 156,526,857천원이 수납되었다.

(나) 세 출

일반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결산액	505,735,241	576,360,055	398,098,997	75,084,761	103,176,297
결산확인액	505,735,241	576,360,055	398,098,997	75,084,761	103,176,297
차 액	0	0	0	0	0

○ 세출결산 개요

- ▶ 예산액은 505,735,241천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70,624,814천원이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576,360,055천원이었고,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액의 0.11%인 539,441천원이었으며, 전용의 주요내용은 세출 예산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과목 해소기준에 맞추기 위한 경우 등으로 예산이용 건수는 없으며 이체는 예산액의 0.01%인 66,627천원으로서 목재문화체험장 시설물관리 업무 이관으로 조정한 것이다.
-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9.1%에 해당하는 398,098,997천원이었으며 이월액은 75,084,761천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38,945,567천원 계속비 이월 10,185,664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5,953,530천원이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군도 확포장과 도로유지 관리사업의 토지보상 협의지 연과 대형 계속사업의 추진 지연 등의 사유에 기인한 것이고,
- ▶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7.9%에 해당되는 103,176,297천원이었으며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집행 잔액, 예산절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 등에 기인한 것이다.

○ 집행잔액 과다발생

- ▶ 예산은 당해연도 업무계획을 근거로 합리적으로 편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성된 예산은 당해 연도에 100%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 ▶ 일부 사업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총 예산액의 69.1%인 398,098,997천원을 집행하고, 이월금을 제외한 103,176,29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총 세입결산액 대비 21.9%인 133,769,772천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398,098,997	398,098,997	0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2016년도 지출액	2017회계연도			전년대비증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율	금액	비율
합 계	369,344,239	576,360,055	398,098,997	69.1	28,754,758	7.8
일반공공행정	30,264,111	37,830,505	32,535,687	86	2,271,577	7.5
공공질서 및 안전	4,366,314	7,758,329	6,266,547	80.8	1,900,233	43.5
교 육	6,366,259	4,516,580	4,403,238	97.5	△1,963,021	△30.8
문화및관광	11,922,424	20,446,199	15,911,068	77.8	3,988,643	33.5
환경보호	35,928,903	45,371,373	41,269,664	91	5,340,761	14.9
사회복지	81,127,257	95,245,193	90,673,765	95.2	9,546,508	11.8
보 건	6,375,484	9,300,982	6,304,543	67.8	△70,940	△1.1
농림해양수산	81,818,318	109,421,413	75,389,518	68.9	△6,428,800	△7.9
산업·중소기업	7,629,068	7,701,792	3,692,253	47.9	△3,936,815	△51.6
수송및교통	18,106,833	35,127,711	20,837,585	59.3	2,730,752	15.1
국토및지역개발	33,653,149	71,756,827	46,409,796	64.7	12,756,647	37.9
예비비		71,727,846			0	
기 타	51,786,119	60,155,304	54,405,334	90.4	2,619,214	5.1

○ 본 회계연도의 기능별 지출액은 사회복지 90,673,765천원, 농림해양수산 75,389,518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46,409,796천원 등의 순이며,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은 공공질서 및 안전 43.5%이며, 산업단지 입주업체 지원금 감소 등으로 산업·중소기업은 전년대비 51.6%가 감소하였다.

3) 특별회계(직영 공기업 포함)

(가) 세 입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71,353,793	73,784,401	73,151,701	42,526	632,700
공기업특별회계	39,839,927	40,686,132	40,604,511	17,231	81,621
상수도	15,035,386	15,684,888	15,635,812	6,258	49,077
하수도	24,804,541	25,001,244	24,968,699	10,973	32,544
기타특별회계	31,513,866	33,098,269	32,547,190	25,295	551,079
의료보호기금	835,763	834,800	834,8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92,668	404,503	404,503		
주차장관리	593,566	1,136,237	585,158	25,295	551,079
산업단지조성사업	5,294,623	6,067,327	6,067,327		
수질개선	5,538,860	5,516,102	5,516,102		
댐주변지역지원사업	689,749	692,875	692,875		
농업발전기금	18,168,637	18,446,424	18,446,424		
결산확인액	71,353,793	73,784,401	73,151,701	42,526	632,700
차 액	0	0	0	0	0

○ 세입결산 개요

- ▶ 수납액 73,151,701천원은 예산현액의 102.5%로서 1,797,908천원이 초과 수납 되었으며 이는 주로 상수도 및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년도 이월금에 기인한 것이다.
- 불납결손처분은 42,526천원이 발생되었으나 검사결과 처분사유가 적정 하였고, 각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각 회계의 결산 확인액과 일치 되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73,151,701	73,151,701	0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나) 세 출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65,127,947	71,353,793	33,820,555	8,387,550 (200,000)	29,145,687
공기업특별회계	34,955,046	39,839,927	22,016,288	7,478,467	10,345,171
상 수 도	13,131,248	15,035,386	8,470,454	1,193,858	5,371,075
하 수 도	21,823,798	24,804,541	13,545,834	6,284,609	4,974,097
기타특별회계	30,172,901	31,513,866	11,804,267	909,083 (200,000)	18,800,516
의료보호기금	835,763	835,763	751,002		84,76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0,000	392,668	392,596		72
주차장관리	593,566	593,566	134,411		459,155
산업단지조성사업	4,345,943	5,294,623	1,790,753	451,659 (200,000)	3,052,211
수질개선	5,538,860	5,538,860	5,062,789	377,979	98,092
댐주변지역지원사업	679,290	689,749	609,384	79,445	920
농업발전기금	18,149,479	18,168,637	3,063,331		15,105,306
결산확인액	65,127,947	71,353,793	33,820,555	8,387,550 (200,000)	29,145,687
차 액	0	0	0	0	0

※ ()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

○ 세출결산 개요

- ▶ 예산액은 65,127,947천원 이었으나 전년도이월액 6,225,846천원으로 예산 현액은 71,353,793천원이었고,
세출예산 전용액은 총21건 539,441천원으로서, 이는 주로 발농업직불금 등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예산의 이체는 총8건 66,627천원으로서, 이는 목재문화체험장 시설물 관리의 업무 이관으로 발생하였음.
-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47.4%에 해당하는 33,820,555천원이며 불용액이 40.9%인 29,145,687천원으로 과다한 것은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의 적립금이 15,105,306천원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데 기인하였으며,
- ▶ 이월액은 8,387,550천원이 발생되었고 이는 주로 사업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에 기인한 것이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33,820,555	33,820,555	0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4)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본 연도의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는 다음과 같다.

계속비이월·명시이월, 사고이월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비고
	내역	금액	내역	금액	내역	금액	
합 계		10,185,664		44,376,654 (200,000)		28,909,993	
일반회계		10,185,664		38,945,568		25,953,530	
일반공공행정				623,119		1,107,853	
공공질서및 안전				400,000		663,024	
문화및관광				1,743,377		1,838,759	
환경보호		198,478		2,479,520		564,136	
사회복지				50,000		494,381	
보건				2,365,007			
농림해양수산		9,987,187		6,735,431		7,623,499	
산업·중소기업				3,170,000		36,477	
수송및교통				11,132,471		1,596,328	
국토및지역개발				10,246,643		12,023,573	
기타						5,500	
기타특별회계				798,668 (200,000)		110,415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420,689 (200,000)		30,970	
댐주변지역지원사업						79,445	
수질개선				377,979			
농업발전기금							
공기업특별회계				4,632,418		2,846,049	
상수도사업				438,455		755,403	
하수도사업				4,193,963		2,090,646	

- 검사결과 계속비는 총26건 10,185,664천원, 사고이월비는 28,909,993천원, 명시이월비는 44,376,654천원으로 확인되었다.

다. 기금의 결산

본년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기 금 현 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 이 월	수 입					지 출	당해연도말 현재액
		출연금	보조금	용자 회수금	예탁금 상 환	이자, 기타		
합 계	13,385,705	250,000	228,100	37,646		248,186	14,149,637	13,565,175
사회복지기금	4,026,403			37,646		68,870	4,132,920	4,062,979
식품진흥기금	65,562		5,000			945	71,506	66,506
재난관리기금	884,139	250,000	223,100			14,690	1,371,929	1,026,850
중소기업육성 기금	6,584,745					111,573	6,696,318	6,560,226
아름예술행 진흥기금	500,318					7,628	507,946	500,446
옥외광고정비 기금	235,219					25,909	261,129	260,279
체육진흥기금	1,089,319					18,571	1,107,889	1,087,889

- 거창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7종으로써, 2017회계 연도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13,385,705천원에 당해 연도 조성액 763,932천원을 더하고 사용액 584,462천원을 공제한 13,565,175천원이다.

최근 5년간의 기금 조성·사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5년 평균 증가율
전년도말 조성액	10,483,586	11,109,376	12,840,358	13,235,728	13,385,705	6.3
당해연도 조성액	1,778,406	2,640,594	1,187,483	952,674	763,932	-19.0
당해연도 사용액	1,152,616	909,612	792,113	802,697	584,462	-15.6
당해연도말 조성액	11,109,376	12,840,358	13,235,728	13,385,705	13,565,175	5.1

거창군 기금은 최근 5년간 평균 5.1%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기금조성에 비해 기금사용의 증가율이 약 3.4%p 낮기 때문이다.

라. 재무제표의 결산

2017회계연도 거창군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7	2016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2,160,618,104	1,985,454,374	175,163,730	8.8%
I. 유 동 자 산	271,426,724	216,229,061	55,197,663	25.5%
II. 투 자 자 산	4,576,826	4,476,826	100,000	2.2%
III. 일 반 유 형 자 산	90,198,953	69,712,648	20,486,305	29.4%
IV. 주 민 편 의 시 설	304,820,576	274,685,641	30,134,935	11.0%
V. 사 회 기 반 시 설	1,488,851,617	1,419,834,278	69,017,339	4.9%
VI. 기 타 비 유 동 자 산	743,409	515,920	227,489	44.1%
부 채	32,819,442	40,329,093	(7,509,651)	(18.6%)
I. 유 동 부 채	6,578,570	12,295,079	(5,716,509)	(46.5%)
II. 장 기 차 입 부 채	-	-		
III. 기 타 비 유 동 부 채	26,240,873	28,034,014	(1,793,141)	(6.4%)
순 자 산	2,127,798,662	1,945,125,281	182,673,381	9.4%
I. 고 정 순 자 산	1,664,902,478	1,564,553,326	100,349,152	6.4%
II. 특 정 순 자 산	14,089,617	13,901,701	187,916	1.4%
III. 일 반 순 자 산	448,806,567	366,670,254	82,136,313	22.4%

- 2017회계연도말 거창군의 자산은 2,160,618,104천원으로 전년도 1,985,454,374천원보다 175,163,730천원(8.8%) 증가하였는데 이는 비유동성 자산의 증가에 의한 것이며, 유동자산 총액은 271,426,724천원으로 작년에 비해 55,197,663천원(25.5%) 증가하였는데, 이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비유동성 자산의 총액은 1,889,191,381천원으로 전년도 1,769,225,313천원보다 119,966,068천원이 증가하였다.
- 본 회계연도말 부채는 32,819,442천원으로 전년도 40,329,093천원보다 7,509,651천원(18.6%) 감소하였는데 유동부채가 6,578,570천원이고 기타 유동부채가 26,240,873천원으로 비 유동부채가 총 부채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 유동부채 총액은 6,578,570천원으로 전년대비 5,716,509천원(46.5%) 감소하였으며 기타비유동부채의 총액은 26,240,873천원으로 전년대비 1,793,141천원(6.4%)이 감소하였다.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7	2016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I. 사업순원가 (가 - 나)	125,363,755	123,373,096	1,990,659	1.6%
가. 사업총원가	261,708,332	251,985,353	9,722,979	3.9%
나. 사업수익	136,344,577	128,612,257	7,732,320	6.0%
II. 관리운영비	58,839,589	55,857,779	2,981,810	5.3%
III. 비배분비용	12,440,680	16,122,746	(3,684,614)	(22.8%)
IV. 비배분수익	29,099,803	25,696,259	3,403,544	13.2%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167,544,221	169,659,910	(2,115,689)	(1.2%)
VI. 일반수익	306,536,837	256,164,312	50,372,525	19.7%
VII. 재정운영결과 (V - VI)	(138,992,616)	(86,504,402)	(52,488,214)	60.7%

○ 기능별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2017회계연도 거창군의 사업 순원가는 125,363,755천원이고 관리운영비(58,839,589천원) 비배분비용(12,440,680천원) 및 비배분수익(29,099,803천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167,544,221천원이다.

한편 재정운영 순원가 167,544,221천원에서 일반수익 306,536,837천원을 차감한 2017년 회계연도 거창군의 재정운영 결과는 (-)138,992,616천원이다.

○ 재정운영 결과 (-)138,992,616천원으로 전년도의 (-)86,504,402천원보다 (-)52,488,214천원(60.7%) 감소하였는데 이는 일반수익 중 주로 정부 간 이전수익 54,292,423천원이 전년대비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마. 성과보고서

- 거창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제2항 및 제44조의2 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의 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 2에 따라 2017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본 회계연도의 「힐링과 승강기의 도시, 행복한 거창」 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 20개→정책사업 목표 71개→단위사업 215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

(단위 : 개, %)

부서명	전략목표수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A)	초과달성, 달성(B)	미달성	달성률(A/B)
계	20	71	215	177	38	82.3
의회사무과	1	1	2	1	1	
기획감사실	1	1	6	5	1	
민원봉사실	1	3	13	13	0	
행정과	1	2	11	11	0	
기업지원과	1	4	10	5	5	
재무과	1	2	9	9	0	
복지정책과	1	8	25	25	0	
안전총괄과	1	3	12	10	2	
경제교통과	1	6	13	8	5	
문화관광과	1	8	16	12	4	
산림과	1	2	11	9	2	
환경과	1	5	14	13	1	
건설과	1	5	13	10	3	

부서명	전략 지표수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A)	초과달성, 달성(B)	미달성	달성률 (A/B)
도시건축과	1	5	10	5	5	
농업기술센터	1	6	23	18	5	
보건소	1	1	9	8	1	
평생교육센터	1	5	8	7	1	
수도사업소	1	2	4	2	2	
체육시설사업소	1	1	4	4	0	
저장사전사업소	1	1	2	2	0	

- 거창군의회에 제출된 성과계획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민원봉사실 등 6개부서는 100%를 달성한 반면 기획감사실 등 14개 부서에서는 미달성이 38건으로 82.3% 달성에 거치는 결과를 보였다.
-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성과지표의 설정근거가 미흡하거나 측정방법이 타당하지 않은 지표들이 확인되었고,
- 성과분석에도 목표치 미달성 및 초과달성 지표에 대한 원인분석이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실적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사례들이 확인되어 원칙적으로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과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전반의 적정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바.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 채 권

채 권 현 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4,883,974	220,151	213,945	4,890,180
일 반 회 계	4,488,827	-	-	4,488,827
특 별 회 계	5,250	-	-	5,250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5,250	-	-	5,250
기 금	389,897	220,151	213,945	396,103
사회복지기금	389,897	220,151	213,945	396,103

○ 채권의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4,890,180천원으로 전년도 말 잔액 4,883,974천원에서 당해 연도 220,151천원이 발생하고, 213,945천원이 소멸 되었으며, 당해연도 소멸액 213,945천원 중 이행기간도래액은 4,535천원, 기한미도래액은 209,410천원으로

이는 전년도말 현재액 이행기한미도래액 중 당해 연도에 이행 기한이 도래한 금액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당해 연도 말 채권은 4,879,344천원으로 보증금채권 145,474천원, 융자금채권 4,733,870천원이며, 보증금채권은 전화예치금 12,474천원과 회원권 133,000천원, 융자금채권은 공무원학자대여금 4,343,353천원 등 이다.

2) 채무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공유재산

본 년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730,864,710	75,822,190	6,770,697	799,916,203	
행정 재산	공공용재산	599,698,373	64,423,145	4,711,013	659,410,505
	공용재산	100,980,275	9,486,943	827,584	109,639,634
	기업용재산	-	-	-	-
	보존재산	3,299,112	398,118	-	3,697,230
	소 계	703,977,760	74,308,206	5,538,597	772,747,369
일반재산	26,886,950	1,513,984	1,232,100	27,168,834	

- 2017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799,916,203천원으로 그중 행정재산이 772,747,369천원, 일반재산이 27,168,834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69,051,49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유재산 중 토지가 27,124필지 46,546,198㎡로 287,861,890천원이며, 건물은 571동 208,992㎡, 151,724,665천원이다.
- 그 중 토지는 도로개설, 하천정비,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1,353,182㎡, 5,832,582천원,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신축 등 건물은 35,598㎡, 20,576,154천원이 증가된 반면,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 35건 14,971㎡, 492,929천원 등이 감소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물 품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물품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취 득	처 분	
수 량	866	84	57	893
금 액	6,265,392	1,395,180	418,971	7,241,602

- 검사결과 현재 물품은 7,241,602천원으로 신규취득 등 1,395,180천원, 매각·폐기 등 418,971천원으로
물품은 전년도 보다 976,21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사유는 미니버스 5대, 471,542천원 등 각종 차량, 냉·전산장비 등의 신규 취득으로 발생한 것이다.
사. 그 외 미흡한 분야에 대하여는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4. 질의 및 답변

- 채권현재액 결산 철저
- 이월금액 과다 발생에 따른 재정계획과 재원 배분문제 등 계획적인 예산추계가 있어야 할 것임.
-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는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